
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

※어두운 난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	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전화번호 (유선) (휴대전화)		
		전자우편		
공급유형	일반공급 신청자		특별공급 신청자	
	청년 []	신혼부부 []	청년 []	신혼부부 []
	16A형[] 16B형[]	34형[] 32형[] 31형[]	19형[] 16A형[] 16B형[]	34형[] 31형[]
신청내역	주택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73-6외 1필지			
	주택유형	단독주택[], 다가구주택[], 아파트[], 연립주택[], 다세대주택[], 오피스텔[], 도시형생활주택[]		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신길역 준타워 (청년주택)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.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.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4.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(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) 5. 혼인관계증명서(별표 1 제1호나목2)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	--	--------

유의사항

-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.
- 이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, 이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,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